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94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조지연·고동진·김형동

박덕흠 • 김도읍 • 조배숙

김종양 • 박준태 • 엄태영

장동혁 · 김은혜 · 김정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로 출고한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명령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 허용기준 달성 여부는 제작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상황, 소비자 선호도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환명령 미이행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음.

이에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현행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89조제7호의2 삭제).

법률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제89조제7호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			
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		
	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89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			
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u>	<u><삭 제></u>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			
동차를 제작한 자			
7의3. ~ 13. (생 략)	7의3. ~ 13. (현행과 같음)		